

갈등과 논쟁에 대한 보도

-균형, 공정성, 명예훼손에 대한 측정-

시몬, 피코, 레이시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1989년 여름호)에 실린,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인 Simon, Fico, Lacy의 「covering Conflict and Controversy Measuring
Balance, fairness, Defamation」을 번역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명예훼손소송 등 법적 소송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법적 책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Gertz 대 Welch 사건 1)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1974년 판결의 자연스런 결과인데,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 법정은 사인에
대한 과실의 기준으로는 「부주의」(negligence)를 공인에 대한 과실의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악의」(actualmalice)를 채택하여 왔다.2) 과실입증이란 책무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여야만 하는 행동기준으로부터 이탈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피고 미디어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측은 기자나 미디어 제작진이 이른바 「주의의 기준」으로 불리는
행동기준으로부터 이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3) 「주의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전개되어 왔다. 한가지 입장은 언론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혼동시키거나 4) 또는 원칙이나 사명의 공표를
형식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5)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언론윤리강령의 적용을 공개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명예훼손이 있게
되면, 언론인의 행위를 조사하게 되며 또한 윤리강령상의 전문적 기준은 언론계내부의
기준의 증거이므로 언론활동에 접근하는데 있어 윤리강령은 일부분 공통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6)

윤리강령을 주의의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측의 취약점은 강령이 본질적으로 철학적인
것이라는데 있다. 여러 언론기관의 다양한 윤리강령 중 소수의 규정만이 증명하거나
반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부적이다.7) 반면에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의 취약점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더 나은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증언과 피고인 자신의 잠재적 진술 이외에는 윤리강령만이 오직
유용한 기준의 증거로 남는다.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매 명예훼손소송마다
배심의 사실심리는 다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이 일반개인의 부주의 기준(ordinary
person negligence standard)을 사용하고 없는 대부분의 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즉 배심원들은 「저널리스트의 직무상 가실기준」(a journalistic malpractice
standard) 대신에 합리적이고 분별력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부주의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놀랄 정도의 높은 비율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8)
따라서 더 나은 기준이 필요하다. 한 학자는, 명예훼손소송에서 「저널리스트의 직무상과실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피고 미디어 측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9) 「저널리스트의 직무상 과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전문적 기준을 위반하면 명예훼손소송에서 제소로 귀착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사건에서는 원고가 반드시 입증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다. 그 첫번째가 언설이 「중상의 의미」(defamatory meaning)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사가 부주의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중상의 의미가 부족하면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전문적 규범의 고수여부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첫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명예훼손의 기본요건인 중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상의 의미는 명예훼손의 주출돌과 같으며 법원에서 전형적으로 묻게 되는 첫 질문인데 만약, 중상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발견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기각된다.10)

대법원은, 어떤 언사가 「특정인의 명예에 실제적인 위험」11)을 가한 경우 명예훼손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상의 의미를 객관화시켰다. 기자는 기사작성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당연하며, 법정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신문윤리와 명예훼손에 관해 학계에서 제기된 주장은 너무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는 주장은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상당부분이 법정에 의해 공감되고 있다.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윤리강령상의 기준의 고수 혹은 비고수에 따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규범적인 논쟁을 검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 윤리 강령들이 많은 항목에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러한 항목 중 대부분이 쉽게 입증되지 않는다. 내용분석에서 가장 할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뉴스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다룬 조항이다. 균형성과 공정성은 대부분 언론기관의 윤리강령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12) 공정성은 기사에서 그 기사의 주요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또 다른 분야는 보도의 균형성에 관한 부분이다. 13) 균형성은 특정한 입장에 대한 기사 취급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사가 한쪽으로 치우칠수록 균형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 14)

본 연구는 논쟁을 담은 보도에 한정하였다. 법집행에 관한 지방기사, 교육, 지방정부와 사업에 관한 기사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공정성 및 균형성과 관련하여 6 가지의 연구문제가 다루어 졌다.

- 1) 공정성과 논쟁보도의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 2) 공정성과 기사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재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있는가?
- 3) 공정성과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의 유형간에는 관련성이 있는가?
- 4) 기사의 균형성과 논쟁기사의 유형간에는 관련성이 있는가?
- 5) 기사의 균형성과 기사에서의 명예훼손적 언사의 언급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6) 기사의 균형성과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의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만약 가설이 지지된다면, 언론계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기사가 결국 소송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가사무국(Bureau of National Affairs)이 발행하는 언론법률보고서 (Media Law Reporter)를 참고하였다. 지방정부, 법집행 그리고 사업에 관한 기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교육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지방보도에 해당하므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방법

인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총 21개의 신문을 사용하였다.

언론관계 전문지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5개의 「권위지」(Prestige newspaper)를 첫번째 그룹으로, 미국 일간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12개 신문을 두번째 그룹으로, 그리고 권위지인 동시에 발행부수도 많은 이른바 「많은 발행부수/권위지」로 불리는 4개 신문을 세번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15)

1986년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주간 동안의 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정부, 지방공립학교교육, 지방사업 또는 지방의 법집행에 관한 논쟁적인 내용의 기사를 모집단(universe)으로 하였는데 두 사람이 이를 분류하였다. 3번째의 분류자는 앞의 두 분류자의 판단을 검증하였고 대상기사의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16) 지방기사는 보도진의 필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신문사의 중앙 편집국이 위치한지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기사로 한정하였다. 통신사보도물, 신디케이트물(Syndicated Material) 또는 의견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논쟁을 다룬 기사란 비행(wrongdoing), 부도덕(impropriety), 또는 갈등(conflict)을 포함하는 기사를 말한다. 비행기사란 확인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가 민·형사상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초점을 둔 기사로 정의하였다. 부도덕기사란 확인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또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도덕 또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갈등기사란 상반되는 양측 또는 다수간의 입장에 의해 제시된 공·사적 단체의 정책주제에 명백하게 대치되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말한다. 620개의 기사가 내용분석을 위해 추출되었으며 39개의 변수가 각 기사의 내용분석에서 코드화 되었다 이러한 변수 각각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앞의 세 분류자가 하였고 표본이외의 신문을 포함한 예비조사에서 시험되었다 표본의 약 25%가 분류된 후 분류자 신뢰도 조사(Coder reliability test)를 실시 하였다. 세사람의 분류자간에 최저 70%의 동의를 얻지 못한 변수는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후속분석에서 탈락되었다 17) 법집행, 교육, 지방정부와 사업기사 각각에 대해 우선 기사의 전체길이를 단어수로 측정하여 코딩했으며, 또한 비행, 부도덕, 갈등 부분의 언설에 대해서도 코딩하였다. 기사크기와 열도, 칼럼폭의 변화에 관계 없이 정확하고 일관된 측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1인치당 단어수방식(words-per-inch formula)을 사용하였다. 각 기사에서 비행과 부도덕, 갈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코딩하였다. 중요한 내용의 입장이나 서술에 사용된 단어수도 계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기사에 명예훼손부분이 있는지, 또 명예훼손적 문맥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명하였다. 확인가능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언설은 「명예훼손」으로 코딩하였다. 법정에서 판단하는 명예훼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기사가 그 지역의 합리적인 독자로 하여금 언설의 대상을 평가절하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 코딩에서는, 「중상의 의미」 문제를 타뤘던

법정의견들의 예를 참고하였다 분류 자들은 「감정유발단어」(the redflag words)도 명예훼손적 내용에 포함시켰다.19)

만약,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인지의 여부에 대해 후속판단을 하였다. 만약 명예훼손 여부가 의문시되는 연설이 있다면, 그 연설은 「조건부적」(qualified)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의심할여지 없이 명예훼손적인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연설하였다면, 「무조건적」(unqualified)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설이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예훼손 그 자체」로 분류하였다 그 외 독자들이, 보도대상이 된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은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코딩했다.20) 명예훼손의 각 변수들에 대한 코딩 일치도는 73%에서 100% 사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80%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공정성과 균형성이 신문의 종류, 논쟁기사의 종류 그리고 명예훼손기사의 게재정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설정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첫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한주간 동안의 21 개 신문의 지방논쟁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거의 일반화 할 수 없다. 더욱이 표본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룹간 차이는 본 연구대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검증을 위한 추리통계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t-test 와 Chi-square test 는 그룹간의 중요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620 개의 연구대상 기사를 기사내용별로 살펴보면, 법집행에 대한 기사가 279 개 (4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두번째는 34%로 나타난 지방정부에 대한 기사였으며, 그 다음은 17%로 나타난 사업기사였다. 교육에 대한기사는 26 개(4%)로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관된 논쟁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기사 중 50%(307 개)가 비행과 관련한 기사였는데, 비행기사의 80%정도는 법집행 기사였다. 전체기사의 41%(257 개)가 갈등과 관련한 기사로 나타났는데, 갈등기사의 59% 정도는 지방정부에 대한 기사였다. 전체기사 중 9%(55 개)만이 부도덕과 관련한 기사였다. 부도덕기사의 60%는 지방정부에 관한 것이며 26%는 법집행에 관한 것이었다. 비행범주에서 법 집행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도표에서는 법집행 기사를 기타 다른 3 종류와 구분하였다. 균형성은 각 입장간 차이의 절대가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72.62 단어의 절대가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형적인 기사길이는 대체로 518 단어를 넘지 않았다. 공정성의 개념은 논쟁에서 주요한 양측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과 접촉이 이루어졌는가를 판정하여 측정하였다. 논쟁기사 중 66%가 양측과 성공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6%의 기사는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 하였다는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으며 접촉시도 여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문의 3 가지 형태 즉, 「권위지」, 「많은 발행부수 신문」 그리고 「많은 발행부수/권위지」 중에서, 연구대상 기사의 24%는 「권위지」에서, 62%는 「많은 발행부수 신문」에서, 나머지 14%는 「많은 발행부수/권위지」에서 각각 보도한 것이었다. 첫번째의 연구문제는, 공정성과 논쟁기사의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표 1>은 법 집행기사에 있어서 그러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에 관한 법집행기사의 약 47%가 한쪽과의 접촉이 없었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기사에서도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부도덕과 관련한 이러한 기사 중 약 24%가 접촉이 없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비행의 17.2%, 갈등기사의 13.7%와 비교된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기사에서, 공정성은 명예훼손 내용의 게재여부와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것이다. <표 2>는 기사에서의 명예훼손과 접촉부족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 관련성은 법집행기사 중 무조건적 명예훼손에 있어 존재하였다. 법집행 기사를 제외한 다른 기사에 있어, 그 관련성은 조건부적인 명예훼손에서 발견되었다. 무조건적 명예훼손과 연관된 217 개의 법집행 기사 중 거의 반 정도가 논쟁하는 한쪽과는 접촉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교육, 정부, 사업기사의 25%가 명예훼손적인 주장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으나 접촉을 하지 않은 조건부적인 명예훼손을 하였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공정성과 연구대상 신문의 유형간에는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표 3>은 많은 발행부수 신문의 법집행기사 중 49%가 논쟁하는 한쪽과의 접촉을 하지 않은 데 비해 「권위지」와 「많은 발행부수/권위지」 두 그룹은 그들의 법집행 기사의 1/3 에서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관련성은 비교적 약하였다. 세 유형의 신문 모두는 양측의 인물을 접촉하는데 있어 사업, 교육, 정부 기사에서 좀 더 잘 처리하였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 그룹은 교육, 정부, 사업기사의 21%가 한쪽과는 접촉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권위지」에서의 약 7%, 「권위지/많은 발행부수」의 약 8%보다 높았다. 네번째의 연구문제는 균형성과 논쟁기사의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길이에 있어서 평균차이는 비행기사의 경우 209.81 단어, 부도덕기사의 경우 153.89 단어, 갈등기사에 있어서는 134.34 단어였다. 비행과 부도덕 기사간 ($P < 0.003$)과 비행과 갈등기사간 ($P < 0.001$)에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5 번째의 연구문제는 명예훼손과 균형성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기사에서 「명예훼손 그 자체」(libel per se)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평균한어차이는 140.9 단어인 반면 「명예훼손 그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의 평균언어차이는 213.69 단어였다.($P < 0.001$)

(표 1) 기사 주제에 대한 공정성과 지방기사종류와의 관계

	기 사 종 류					
	비 행		부 도 덕		갈 등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공정성						
양측 모두와 성공적인 접촉	46.2%	70.7%	85.7%	70.7%	81.3%	83.0%
접촉 없으나 그 이유 설명	7.2%	12.1%	0%	4.9%	0%	3.3%
접촉 없고 그 이유 설명 없음	46.6%	17.2%	14.3%	24.4%	18.7%	13.7%
기 사 수	249개	58개	14개	41개	16개	241개
	X ² = 16.78 df = 2, P < .001		X ² = 1.53 df = 2, N. S.		X ² = 0.85 df = 2, N. S.	

전체 법집행기사에 대한 Chi-square = 15.12, df = 4, P < .005

전체 기타 기사에 대한 Chi-square = 11.19, df = 4, P < .025

기타 기사는 교육,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기사를 포함

〈표2〉 기사 주제에 대한 공정성 종류와 명예훼손 내용과의 관계

	주 장 종 류					
	명예훼손 없음		조건부적 명예훼손		무조건적 명예훼손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공정성						
양측 모두와 성공적인 접촉	74.2%	82.4%	67.7%	73.3%	44.2%	72.9%
접촉 없으나 그 이유 설명	0%	4.1%	9.7%	1.7%	6.9%	11.9%
접촉 없고 그 이유 설명 없음	25.8%	13.5%	22.6%	25.0%	48.9%	15.2%
기 사 수	31개	222개	31개	60개	217개	59개
	$X^2=3.30$ df=2, N.S.		$X^2=2.94$ df=2, N.S.		$X^2=21.45$ df=2, P<.001	

전체 법집행기사에 대한 Chi-square=16.36, df=4, P=.003

전체 기타 기사에 대한 Chi-square=12.11, df=4, P=.017

기타 기사는 교육,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기사를 포함.

〈표3〉 기사 주제에 대한 신문종류와 공정성과의 관계

	신 문 종 류					
	권 위 지		많은 발행부수		권위지점 많은 발행부수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법집행	기 타
공정성						
양측 모두와 성공적인 접촉	54.2%	87.5%	47.1%	73.8%	56.3%	89.7%
접촉 없으나 그 이유 설명	10.2%	5.7%	4.1%	5.1%	10.4%	2.6%
접촉 없고 그 이유 설명 없음	35.6%	6.8%	48.8%	21.1%	33.3%	7.7%
기 사 수	59개	88개	172개	214개	48개	39개
	$X^2=25.78$ df=2, P<.001		$X^2=33.28$ df=2, P<.001		$X^2=11.44$ df=2, P<.005	

전체 법집행 기사에 대한 Chi-square=7.94, df=4, N.S.

전체 기타 기사에 대한 Chi-square=12.44, df=4, P<.014

기타 기사는 교육,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기사를 포함.

6 번째의 연구문제는 균형성과 해당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유형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권위지」에서의 상반되는 입 장간의 절대가치에 대한 평균단어차이는 173.35 단어였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서의 차이는 160.48 단어였고 「많은 발행부수/권위지」는 228.45 단어였다. 「많은 발행부수/권위지」와 「권위지」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고(P<0.001) 「많은 발행부수/권위지」와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간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유의미 한것으로 나타났다. (P<0.02) 이러한 분석이 명예훼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석은 공정성, 균형성, 명예훼손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한측과 접촉을 하지 않은 기사의 경우, 성공적인 접촉을 한 기사보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연구대상기사에서 밝혀진 전체적인 균형성과 공정성에 관해 정형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가 불균형 또는 불공정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측정 이외의 다른 요인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쟁기사에서 논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단어의 평균절대차이 172 단어는, 각 기사의 전체평균이 518 단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숫자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기사의 20%가 논쟁의 한쪽 대표와 접촉하지도 않고 또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기사가 과연 공정할까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공정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법집행기사의 취재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즉, 범죄 기사를 다루면서 경찰 또는 검찰의 발표나 입장만을 보도하고 피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일반화된 관행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피의자측 입장은 재간을 취재한 기사로서나 보도될 것이다. 물론 피의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성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노력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사 중 몇몇(6%)은 실패한 접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보도했다.

최상의 형태로 생각되는 「많은 발행부수/권위지」의 경우, 균형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비 권위지가 공정성에서 최악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나, 권위지까지도 조사기간 중 법집행기사의 2/3 에서만 양측 모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보도와 명예훼손간의 관계는 본 연구의 핵심적 문제이다.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한 기사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불균형 또는 불공정한 윤리적 위반을 동반한 것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신문은, 일상적인 취재보고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개인을 비난해야만 한다. 그러나 진실이거나 용인될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²¹⁾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자의 보도윤리기준은 명예훼손법률의 기준보다 높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윤리강령의 사회책임적 접근²²⁾을 지지한다. 법이나 윤리강령 모두 논쟁기사에서는 상반되는 양측에 대해 균형된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사가 명예훼손을 내포하고 있을 때, 언론인의 실제 행동은 그들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행을 주장하는 법집행기사의 경우, 논쟁의 한측만 접촉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을 주장하는 교육, 정부, 사업기사의 경우 17%만이 논쟁의 한측만 접촉하였다. 비행을 주장하는 기사는 개인 또는 단체에 명예훼손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²³⁾ 그런데도 비행을 주장한 307 개의 기사 중 126 개의 기사에서, 기자는 비행고발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를 접촉하는 데 실패했다. 같은 문제가 균형성에서도 발생하였다. 비행기사의 경우, 부도덕기사나 갈등기사 보다 훨씬 더 불균형적인 보도가 이뤄졌다. 고발당한 측의 입장은 지면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으며, 반영된다 하더라도 적은 지면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기사의 대부분이 경찰측의 입장만 보도한 법집행기사이며, 이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가 유죄로 판명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균형성의 부족이 명예훼손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인 범죄보도는 규범이다.²⁴⁾ 본 연구와 규범적인 참고문헌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그 기사가 눈에 띄게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이 명백할수록 불균형성 또는 불공정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소송에서 매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균형성과 공정성의 규범을 고수할 경우 부주의를 앞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²⁵⁾

언론윤리강령은 균형성과 공정성이 더 좋은 신문을 만든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 가정과 부합된다. 공정하고 균형된 기사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함축된 의미는 방대하다. 명예훼손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기사-정확하게는, 기자를 조심하도록 만들 것이 틀림없는 그런 종류의 기사-에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장 가볍게 취급된다. 아마도 불균형성이나 불공정성은 그 주장이 진실이거나 용인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자들은 전통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야기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사로그들 자신과 그들의 조직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본 연구결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 신문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추후의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문경영진이 자신들의 신문에 대한 균형성 및 공정성 조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경영자는 기자들에게 기사작성을 위해 시간을 더 주는 대신, 어느 수준의 불균형, 불공정 또는 명예훼손을 감수할 것인가? 만약 기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그 시간을 논쟁당사자 양측을 접촉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또, 범죄기사에서 경찰측 입장만을 보도하는 기준관례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미국 언론인들의 윤리적인 행동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신문과 독자, 그리고 법정간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주

1) 418 U.S. 323, 347-348(1974)

2) W. Wat Hopkins, "Negligence 10 years after Gertz Y. Welch," Journalism Mono Traphs No 93(1985). PP 5, 21-25; 418 U.S. at 342-346.

3) Seegmiller V. KSL. Inc 626 p. 20 968,976(Utah 1981) , William M. Prosser, Law of Torts, 4th ed. (51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71), PP. 143-149.

4) Robert I Drechsel, "The Legal Risks of Social Responsibility," unpublished manuscript presented to the Law Division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an Antonio, Texas, August 1987. pp. 20-23.

5) Robert H Wills. "Why the Board Said 'No'to Censure," Quill, June 1987, pp. 47-49; John C. Merrill, The Imperative of Freedom. (New York Hastings House 1974), PP. 163-173; Robert E. Drechsel, "Media Tort Liability for Physical Harm", Journalism ·Quarterly. 64: 99-106 (Spring 1987)

6) Todd F. Simon. "Libel as Malpractice; News Media Ethics and the Standard of Care," Fordham Law Review 53: 449 (1984); Jerome A. Barren. "The Search for Media Accountability,"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19: 789(Winter 1985). Restatement (Second) of Torts, sec 580B Comment g (1977) .

7) 예를 들면 미국언론인협회의 윤리강령인 Sigma Delta Chi 에서는 「명성이 있거나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고발은 고발된 측에서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는 세부적 지침을 주고 있으나, 또한, 「진심은 협회의 궁극적 목표이다」(정확성과 객관성)란 참으로 매우 일반적인 단서를 말하고 있다 John L.Hulteng, *Playing It Straight* (Chester. Conn. GlobePequot Press 1981) PP.82-84 에서 발췌 8) Marc A. Franklin, "Some Themes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Libel Law," *Communication Lawyer*, 4 : 1. 20-25(Summer 1986)

9) Simon op cit, PP, 487,489.

10) Arthur B. Hanson, *Libel and Related Torts*.(New York : ANPA Foundation 1969), pp 29-34

11) Gertz. 418 U. S. at 348, citing *fo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부. 130, 155(1967)

12) Code of Ethics, Sigma Delta Chi, supra : "ASNE Statement of Principles", reprinted in JohnL Hulteng, op.cit. pp. 85-86 , "Associated PressManaging: Editors Code of Ethics, " reprinted in JohnL. Hulteng, supra, pp. 77-79.

13) David Pritchard. "Race, Homicide and Newspapers, " *Journalism Quarterly*, 62500-07 (Autumn 1985)를 예로 참고하시오.

14)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모든 불균형된 기사가 반드시 나쁜 보도는 아니다 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사에서 논쟁 당사자에게 부여된 단어수를 세어 균형성을 측정하였다 어떤 기사들은 단순히 동등한 주목을 받을 만한 양측을 갖추지 못한다. 갈등기사의 한 종류인 범죄기사에 있어 불균형성은 규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Robert E. Drecksel, Hermit Metteburg & Bisi Aborisade, "Community Size and Newspaper Reporting of Local Courts. " *Journalism Quarterly*, 57: 71 (Spring 1980) .

15) 권위지 그룹에는 the Atlanta Constitution. The Baltimore Sun, the Louisville Courier-Journal. theMilwaukee Journal, the 51 Louis Post Dispatch 가 속한다. 낮은 발행부수 그룹에는 the New York Daily News, the New York Post, the Detroit News, the Chicago Sun-Times, the Detroit Free Press, Newsday, the San Francisco Chronicle. the Philadelphia Inquirer, Houston Chronicle the Minneapolis Star and Tribune 등이 있다. 많은 발행부수/권위자 그룹에는 the Los Angeles Times. the New York Times, the Chicago Tribune, the Washington Post 가 속한다. 권위지의 명단은 George Thomas Julian, *World Press Encyclopedia*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2)에 수록된 John Merrill 과 HaroldFisher 의 "World's Greatest Dailies"에서 입수되 있다. 이에 더하여, *Journalism Quarterly* 61: 49-55(Spling1984)에 실린 Guide Stempel II 와 John W. Windhauser 의 "The Prestige Press Revisited"에서의 명단도 참조하였다 발행부수량은 1986 Editor &Publisher International Yearbook (New York: Editor& Publisher, 1986)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The Christian Science Mouitor, USA Today 그리고 the Wall Streel Journal 은 제외되었다.

16) 원 분류자와 확인 분류자가 토의 후 일치되지 않은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토의 이전의 원 분류자와 확인분류자간의 전체 동의비율은 평균 약 70%이었다

17) 코딩지, 조작적 정의 그리고 test 결과의 사본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바람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신문은 변수의 정의를전개하는데 사용되었다. 표본에 속하는 사본은 분류자 신뢰도 조사에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계획서는 요청한다면

저자로부터 활용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의 변수자체에 대한 분류자간의 전체동의 비율은 78%이었다

18) Prosser. op. cit., PP. 739-744

19) Bruce W. Sanford Synopsis of the Law of Libel and the Right of Privacy 2d rev. ed. (New York: Scripps Howard 1984), PP 33-35.

20) Nelson & Teeter. op. cit., pp 94-96.

21) Donald M. Gillmor & Jerome A. Barrel, Mass Communication Law 4th ed (51.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84). pp. 259-66.

22) Barbara W. Hartung, "Attitude Toward the Applicability of the Hutchins Report on Press Responsibility, " Journalism Quarterly. 58:428 (Autumn 1981)

23) Sanford, op. cit. 24) Pritchard, op. cit., pp. 502-507 25) Simon, op. cit., PP. 467-471